

1.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6,179호 1999. 3. 1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준농림지역중 상·하수도 및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준농림지역보다 용적율을 10퍼센트 더 확보하여 건축물 기타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준농림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1999. 2. 8, 법률 제5907호)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의 토지거래약 체결사실의 사후신고제도, 토지거래신고제도 및 유희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3. 용적률 100퍼센트(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너비 4미터이상의 진입도로를 갖춘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나. 수도법에 의한 일반수도가 설치되어 용수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

제22조제2항중 “신고대상면적”을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거나 그 지역을 법 제2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구역으로 변경지정하는 경우”를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25조이 제목 “(허가구역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의 신고면적등)”을 “(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을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신고 대상면적“을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3항중 “법 제21조의4 또는 법 제21조의8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권고기준”을 “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준”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중 “토지거래계약허가제 및 신고제”를 “토지거래계약허가제”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21조의3 및 법 제21조의7”을 “법 제21조의3”으로 한다.

제31조·제32조 및 제3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를 제3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 또는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허가·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내에 있는 경우

제45조의2제2항중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 또는 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구역”을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토지거래계약허가자료 및 토지거래계약신고자료”를 “토지거래계약허가자료”로 한다.

제58조제1항제7호중 “허가구역 및 신고구역”을 “허가구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구역 또는 신고구역”을 “허가구역”으로 한다.

제59조제4항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1조의14, 법 제21조의15 및 법 제21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매수청구실적 및 토지이용조사에 관한 현황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14호중 “400퍼센트이하(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를 “400퍼센트이하(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3 단서에 해당하는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10퍼센트이하, 그밖의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주택회보